

## 1.4 국제협력위원회규정

2008. 8. 3 제정

2014.01.07. 개정

2020.09.01 개정

**제 1조 (목적)** 본 규정은 수의학분야에 있어 세계적 선도 그룹 진입을 위한 고급인력 양성이라는 본 연구단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지향 대상 대학을 포함한 외국 대학과의 공동교육프로그램 운용 및 연구제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 2조 (명칭)** 본 위원회의 명칭은 ‘BK21 FOUR 미래수의학선도교육연구단 국제협력위원회’라 한다.

### 제 3조 (위원장)

- (1)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단장이 임명한다.
- (2)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,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### 제 4조 (구성)

- (1) 본 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(2)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연구단장이 임명한다.
- (3)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의대 기획부학장을 위원회 회의에 초빙할 수 있다.

**제 5조 (임기)**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 6조 (사업)** 본 위원회는 미래수의학선도교육연구단의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관장한다.

- (1) 외국 제휴 대학의 선발, 협력 방안 심의, 협력체계 설립 및 유지
- (2) 파견 및 요청 연구요원의 자격, 초청기간, 파견 소요 예산의 심의
- (3) 파견 및 초청의 성과 평가

**제 7조 (운영세칙)**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별 운영세칙을 따로

정할 수 있다.

◁ 부 칙 ▷

- (1)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(2006. 8. 3)로부터 시행한다.